

---

#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

---

## 1. 행정규칙명

- 「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」 (관세청 제2017-48호, 2017.7.28.)

## 2. 개정사유

- ① 납부기한 재연장 승인권자 하향 조정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 도모
- ② ‘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’ 서식을 마련

## 3. 주요 개정내용

- ①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재연장 승인 권한을 관세청장에서 세관장으로 하향 조정(제2조제3항)
- ②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 서식 신설(별지 제1호, 제2호)

## 4. 전문 및 신규 조문 대비표 : “붙임” 참조

## 5. 규제대상 여부 : 해당 없음

## 6. 시행일자 : 2022. 0월

## 7. 의견제출 방법

- 제출처 : 관세청 세원심사과
- 담당자 : 신상애 관세행정관(042-481-7644)
- 제출기한 : 2022. 00. 00.
- 제출방법 : 이메일(shinsang@korea.kr), 팩스(042-481-7869)